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1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12. 11) 상정
- 제14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12. 11)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금 영 수)

가. 제안이유

- 우리 시의 공산품 및 농산물 수출입업의 대행과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2007. 9. 21. 청산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동 조례 폐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해당없음	<input type="radio"/> 해당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176호
의결 년월일	2007. 12. 21 (제140회)

제출년월일 : 2007. 11. 1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우리 시의 공산품 및 농산물 수출입업의 대행과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2007. 9. 21. 청산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동 조례 폐지”

□ 폐지 조례안: 별 첨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

제정 1999. 03. 30 조례 제16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및 상법에 의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공산품 및 농산물 수출입업의 대행과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라 한다.

제3조(사무소) ①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시내로 한다.

②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②회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자본금) ①회사의 수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②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제6조(사업) 회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산품의 수출입업 및 국내외 시장개척
2. 화훼, 특용작물의 국내외 시장개척
3. 구상무역으로 수출시장 판로 확장
4. 외자유치 및 투자
5. 국내 및 해외기업의 대리점
6. 각기관 및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수출입업 및 부대사업
7. 무역거래 알선 및 대행업
8. 수출입 물품의 부대사업(운송, 하역, 통관등)
9. 물품 매도확약서 발행업
10. 수출입 상품의 임가공, 수집, 위탁 및 제조판매업
11. 지역개발 수익사업
12. 기타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대사업

제7조(시의 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이 행사한다.

제8조(사장 및 임직원의 자격요건과 책무) ①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및 상근임원은 무역업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 및 통상업무에 상당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로 하고, 직원은 공개경쟁으로 선발한다.

②제1항의 대표이사 사장 및 임직원은 상법 제3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9조(지방비의 부담) ①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익상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시)가 요구한 사업으로서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2. 회사 설립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

②제1항 각호의 비용에 관하여 회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2조(경영평가)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경영진반에 관하여 연1회이상 평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등) ①시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경영상황에 관한 필요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9.03.30 조례 제1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